

문경관광진흥공단 인사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06. 30.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문경관광진흥공단 규정 제245호

문경관광진흥공단 인사규정 중 일부개정 규정(안)

문경관광진흥공단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승진소요기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승진소요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에는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합산한다.

-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제47조 제2호·제4호·제5호·제6호의 휴직기간
-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제27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④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소급하여 승급시킨다.

제51조(직위해제) 제1항 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직위해제)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당연